

## 참고1

##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

### □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구분	법조항	주요 내용
역학 조사	제18조	① 질병관리본부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,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- 결과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 (지역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) ② 질병관리본부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 ③ 누구든지 <b>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·방해·회피, 거짓진술, 거짓자료 제출, 고의 사실누락·은폐 금지</b> ※ (제79조)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	제35조의 2	○ “주의”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<b>누구든지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·진료이력 등 거짓진술·고의적 누락, 은폐 금지</b> ※ (제83조)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환자 및 접촉자 관리	제37조	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 운영이 가능하며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격리소·요양소를 설치·운영하여 조치가 가능
	제41조	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<b>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</b> 를 받아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,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음 ③ <b>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</b> 하게 할 수 있음 ※ (제79조의3) 조치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2020.4.5.시행)
	제46조	○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감염병환자등의 가족·동거인, 발생지역 거주인, 접촉자 등에게 건강진단, 예방접종 등 조치 가능

## 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9-1판 부록

Q1.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?

-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,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b>의사환자</b>	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<b>조사대상 유증상자</b>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주요 임상증상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	

Q2.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?

-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※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→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→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
-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Q3.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?

- 접촉자의 범위는 시·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.
-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, 노출력(접촉 장소·접촉 기간 등)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(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)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.

Q4.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-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(자가, 시설, 병원)를 실시합니다.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, 생활수칙을 안내하며, 1: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.

Q5.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,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고,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공용화장실, 세면대를 사용한다면, 사용 후 소독(락스 등 가정용소독제)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, 식사는 혼자서 하며,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Q6.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?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Q7.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세제(또는 비누)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, 바이러스, 먼지,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.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.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.

Q8.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?

-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~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,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.

-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.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Q9. 외국인인데,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,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출국할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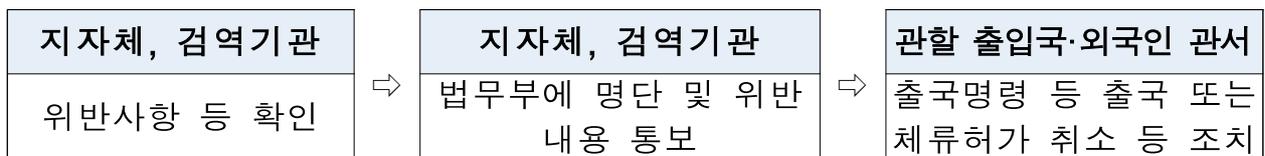
- 출국할 수 없습니다.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,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단 본국 귀환 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,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시설 격리 중 출국을 희망하면 출국할 수 있습니다.

## 2. 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요령(3판)

### Q1. 무단이탈자 발생 시 처리 절차는?

- 무관용 원칙(one-strike out)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
- 고발조치와 별개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동되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고,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

※ 자가격리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는 시설격리 조치



### Q2. 무단이탈 위반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 기준은?
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-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+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
  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9조의3, 「검역법」 상 적극적인 고발
  - 형사고발 :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
  - 구상권 행사 : 방역비용·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
  -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(외국인) :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
  -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등

**Q3. 검역신고서에 작성한 거주지에 자가격리를 거부한 경우는?**
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고발대상이며, 특히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상황이므로 자가격리 의무가 부여됨

**Q4. 자가격리 장소를 임의로 변경 가능한지?**

- 입국 시 발부된 격리통지서 상 주소지가 원칙이며,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및 변경 조치 후 이동 가능
- 반드시, 특별검역신고서와 앱에도 실제로 자가격리 할 장소를 기재,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지

**Q5. 자가격리앱 설치 대상은 누구인지?**

- 해외입국자는 의무설치 대상(단기체류자 제외)

**Q6.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누구인지?**

-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착용

**Q7.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?**

-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는 격리통지서 발부, 시설격리 거부 시 고발 조치 등